| 투자위험 3등급[디 | 등급 }소 높은 ⁹ | 위험]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을 감안 하여 <u>3등급으로 분류</u>하였습니다. <u>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u> <u>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 니다.</u>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u>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u>미래에셋</u> **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u>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u>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5년 06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06월 17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2020년 3월 22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 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 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1. 이 집합투자기구가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됩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전환대상 모집합투자기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 전환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 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 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비용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D1622)

|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 |
|----------------------|----------|----------------|----------|----------|----------------|
| 1 | 2 | 3 | 4 | 5 | 6 |
| 매우 높은 위험 | 높은 위험 | 다소 높은 위험 | 보통 위험 | 낮은 위험 | 매우 낮은 위험 |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u>3등급</u>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재간접투자위험**, 부동산투자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1. 투자목적 |
|------|---|
|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 | 2. 투자전략 |
| 투자전략 |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②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
| 분류 | 투자신탁, 부동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
| | |

| 3711 A A B |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 | | |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 | | | |
|----------------------------|-----------------------------|------|------|-------------|--------------|---|-----|-----|------|------|
| 클래스 종류 | 판매 수수료 | 총보수 | 판매보수 | 동종유형 총보수 | 총 보수 • 비용 | 1년 | 2년 | 3년 | 5년 | 10년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납입금 액의 1% 이내 | 1.25 | 0.6 | 1.32 | 1.55 | 258 | 425 | 599 | 971 | 203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1.57 | 0.92 | 1.70 | 1.87 | 191 | 392 | 603 | 1051 | 2337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납입금 액의 0.5% 이내 | 0.95 | 0.3 | 1.02 | 1.25 | 178 | 312 | 453 | 753 | 1612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1.11 | 0.46 | 1.15 | 1.41 | 144 | 296 | 454 | 793 | 176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C-P) | - | 1.38 | 0.73 | - | 1.68 | 172 | 352 | 541 | 944 | 209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C-P2) | - | 1.31 | 0.66 | - | 1.61 | 165 | 338 | 519 | 905 | 2012 |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기타비용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1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제외)는 약 0.290%로 추정됩니다.

| 클래스 종류 | 최초 설정일 | 최근 1년 24.06.01~ | 최근 2년 23.06.01~ | 최근 3년 22.06.01~ | 최근 5년 20.06.01~ 25.05.31 | 설정일 이후 |
|----------------------------|--------------|--------------------|--------------------|--------------------|--------------------------------|-----------|
| 스스크서치 ㅇㅠ긔이(^) | | 25.05.31 | 25.05.31 | 25.05.31 -5.53 | 0.62 | 1.99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 2020.04.24 | 1.24 | 1.01 | -3.33 | 0.02 | 1.9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202010 112 1 | 0.92 | 1.49 | -5.83 | 0.30 | 1.66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 2020.03.23 | 1.55 | 2.12 | -5.24 | 0.92 | 4.1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2020.03.23 | 1.38 | 1.95 | -5.39 | 0.76 | 3.9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 연금(C-P) | 2020.05.18 | 1.11 | 1.68 | -5.65 | 0.49 | 2.1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C-P2) | 2020.06.15 | 1.18 | 1.75 | -5.59 | - | 1.00 |
| 투자신탁 | | 2.52 | 3.08 | -4.34 | 1.88 | 5.13 |
| 비교지수 | 2020.03.23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 11.70 | 11.09 | 13.11 | 10.95 | 11.20 |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주1)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 | 운용현황(25.05.31기준)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부동산)(단위: %) | | | | 0.0 |
|-----|------|-----|------------------|----------|--------------------------------------|------|------|------|--------------|
| 성명 | 생년 | 직위 | | | 운용 | 용역 | 운용 | 용사 | 운용 . 경력년수 |
| | | | 집합투자 기구 수 | 운용규모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0 7 2 7 |
| 송진용 | 1975 | 본부장 | 37개 | 13,362억원 | - | - | 2.52 | 3.09 | 20년7개월 |

운용전문 인력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6.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 원본손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 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 |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 (1) 환헤지 여부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 주요투자 위험 | |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혜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혜지를 실시합니다. |
| 118 | 환율변동위험 | (2) 환혜지 방법 환혜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
| | | (3) 목표 헤지비율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 | |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일본엔(JPY), 홍콩달러 (HKD), 싱가포르달러(SG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혜지 가 가능한 미국달러(USD)와 그 외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혜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 | | | 해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해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않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혜지 방법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 내 률에 미치는 효과 하고도, 환혜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려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 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다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년 | 물환 따라 | | | | |
| | 재간접투자 위험 |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 |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 | | |
| | 리츠 유동성위험 |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라고 할지라도 거 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 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지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발생 | | | | |
| | 국가위험 |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 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 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 | | | | |
| | 상장된 부동산/ 인프라 집합투자 기구등의 가격변 동위험 | 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 |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라한 수 있습니다. | | | | | |
| | 변동성 매매 전 략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시장가격(주가)과의 차이 발생시 저가매수, 고가매도의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변동성매매를 활용합니다. 주가 등락에 따라 주가 하락시 저가매수, 주가 상승시 고가매도 기회를 포착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배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 | | | | | |
| 매입방법 | 제3영업일에 공고 2. 17시 경과후 : 7 | 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4영업일 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6영업일에 환매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 | 대금을 | | | | |
| 환매 수수료 | [A, A-e, AG, C, C C-P2e] 없음 | -e, CG, C-I, F, S, C-P, C-Pe, C-P2, |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7영업일에 환 을 지급 | 개대금 | | | | |
| 기준가 | 사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 | | | | |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 | 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 | | | | |

| | 구분 | | | 과세 | 의 주요내용 | | |
|-------------------|---|---|---|----------------------|--|--|--|
| | 집합투자기 | <mark> 구</mark> 집합 | 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 | 소 득 과세 부딤 | '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 | |
| | 수익자 | 로 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 | | |
| | 연금저축계 가입자에 디 과세 | <mark>좌 자신</mark> <mark>대한 금소</mark>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 다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 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 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과세 | 퇴직연금계의 세제 | ^{II소} 라서 | | | 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 | |
| | 조세특례저 법상 공모부동신 합투자기구 관한 과세특 | 한 의 합 경우 - 어 두세 특례 부동 |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독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 | | | |
|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 | 음. | | | | | |
| 집합투자 업자 | 미래에셋자신 | 난운용㈜ (대 | 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 http://inve | estments.miraeasset.com) | | |
| 모집기간 | | | 2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 고집, 판매됩니다. | 모집 • 매출 총액 |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 | |
| 효력발생일 | 2025년 06월 | 실 17일 | |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 | |
| 판매회사 | 집합투자업기 | 다 (http://inv | estments.miraeasset.com) 및 | 한국금융투지 | h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 | |
| 참조 | 집합투자업7 참고하시기 | | 덕,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 | 은 투자설명시 | 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60페이지)을 | | |
| | | | 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 ⁵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 | 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음과 같습니다. | | |
| | 종 | 류 | | 집합 | 합투자기구의 특징 | | |
| | | 수수료 후취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핀 | ·매수수료가 |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 | | | | |
|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 | 수수료 미징구 | | | | | |
| | 판매 경로 | 온라인 | | 가 저렴한 집합 | 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 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 나. | | |
| | 6 年 | 오프라인 | | | 는 집합투자기구로 <mark>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mark>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 | | |

| | |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 온라인 슈퍼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제공되지 않습니다. |
| | 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금전신탁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기관 |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기타 | 펀드 등 |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랩 |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무권유 저비용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판매)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
| 미래에셋밸런스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
| 종류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D1623 |
| 종류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D1624 |
| 종류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D1625 |
| 종류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D1626 |
| 종류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D1627 |
| 종류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D1628 |
| 종류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D1629 |
| 종류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D1630 |
| 종류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D1631 |
| 종류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D1632 |
| 종류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D1633 |
| 종류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D1634 |
| 종류C-P2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D4745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부동산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모자형, 종류형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모자형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 종류형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모집 (판매) 기간 | 모집 개시(2020년 3월 22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
|------------|--|
| 모집(판매) 장소 |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 | | | |
|---------|-------------------------|-------|--|--|--|
| 미래에셋밸런스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 | | |
| 종류A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D1623 | | | |
| 종류A-e | 수수료선취-온라인 | D1624 | | | |
| 종류AG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D1625 | | | |
| 종류C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D1626 | | | |
| 종류C-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D1627 | | | |
| 종류CG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D1628 | | | |
| 종류C-I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D1629 | | | |
| 종류F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D1630 | | | |
| 종류S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D1631 | | | |
| 종류C-P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D1632 | | | |
| 종류C-P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D1633 | | | |
| 종류C-P2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D1634 | | | |
| 종류C-P2e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D4745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일 자 | 내 용 | | |
|------------|--|--|--|
| 2020.03.22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 |
| 2020.04.08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 | | |
| 2020.06.18 | 모자형 전환 | | |
| 2022.04.15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펀드 과세특례 가입 기간 연장 | | |
| 2023.04.14 | 위험등급 변경(2등급(높은 위험) → 3등급(다소 높은 위험)) | | |
| 2024.06.14 |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제8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9영업일) → 제6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7영업일) | | |
| 2024.09.13 | 종류S 보수 변경 (판매회사보수: 0.30% → 0.29%) | |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 경력년수 | 이력 |
|-----|------|-----|----------|---|
| 송진용 | 1975 | 본부장 | /미너 / 개워 |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마케팅, 주식운용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

| | 운용현황(25.05.31기준)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부동산)(단위: | | | (단위: %) | _ 성과보수가 약정된 | |
|-----|------------------|----------|-----------------------------------|------|------|---------|-------------|---|
| 성명 | 집합투자기구 | 운용규모 | 운용역 운용역 | | 운용사 | | 집합투자기구 | |
| | 수 | 正台川工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 송진용 | 37개 | 13,362억원 | - | - | 2.52 | 3.09 | _ |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 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 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 경력년수 | 운용이력 |
|-----|------|-----|---------|--|
| 김명준 | 1984 | 본부장 | 16년6개월 | (08년~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10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

| | 운용현황(25.05.31기준) |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부동산)(단위: %) | | | 성과보수 | 가 약정되 | | |
|-----|------------------|-------------|--------------------------------------|------|------|------|-------|---------|--|
| 성명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 용역 | | | | 집합투자 기구 | |
| | 수 | 군증Ⅱ포 | 최근1년 | 최근2년 | 최근1년 | 최근2년 | | | |
| 김명준 | 22개 | 11,120억원 | 2.52 | 3.09 | 2.52 | 3.09 | - | - | |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기 간 |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2020.03.23 ~ 2020.06.17 | 김명준 |
| 2020.06.18 ~ 현재 | 송진용 |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명 칭 | 기 간 |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 | - | -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투자신탁, 부동산,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자투자신탁 | 모투자신탁투자비율 |
|-------------------------|-----------|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 80% 이상 |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 구분 | 최초설정일 | 가입자격 |
|----------------------------|------------|--|
|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2020.04.24 | 제한 없음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 2020.03.23 | 온라인 가입자 |
|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2020.04.24 | 제한 없음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2020.03.23 | 온라인 가입자 |
|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 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2020.03.23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 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 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2020.07.23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2020.05.18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2020.03.23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2020.06.1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2020.05.14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 지급비율(연 %) | | | | | | |
|----------------------------|------------------|------------------------------------|-----------|-------------|----------|----------|----------|
| 구분 | | 수수료 | | | 보 | 수 | |
| 12 | 선취 판매수수료 | 후취 판매수수료 | 환매 수수료 | 용 보 보 | 판매 보수 | 신탁 보수 | 사무 관리 |
|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납입금액의 1% 이내 | - | - | 0.6 | 0.6 | 0.03 | 0.02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 0.6 | 0.3 | 0.03 | 0.02 |
|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 | 0.6 | 0.42 | 0.03 | 0.02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 - | - | 0.6 | 0.92 | 0.03 | 0.02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 - | - | 0.6 | 0.46 | 0.03 | 0.02 |
|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 - | - | - | 0.6 | 0.64 | 0.03 | 0.02 |
|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 - | - | 0.6 | 0.03 | 0.03 | 0.02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 | - | - | 0.6 | - | 0.03 | 0.02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 | 3년미만 환 매시 환매금 액의 0.15% 이내 | - | 0.6 | 0.29 | 0.03 | 0.02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 | - | 0.6 | 0.73 | 0.03 | 0.02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 | - | 0.6 | 0.36 | 0.03 | 0.02 |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 - | 0.6 | 0.66 | 0.03 | 0.02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 | - | 0.6 | 0.33 | 0.03 | 0.02 |

[※]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o ㅠ ᅴ 네 ㅛ ㄱ ᆫ ^ ^ ^ | | |
|---------------------|------------|--|
| 송 | 류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
| | 수수료 후취 |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판매 수수료 | 수수료 선취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수수료 미징구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온라인 |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판매 경로 | 오프라인 |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mark>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 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mark>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
| 8-2 | 온라인 슈퍼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 <mark>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mark>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mark>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mark> |
| | 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금전신탁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기관 |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71.51 | 펀드 등 |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기타 | 랩 |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무권유 저비용 |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 모투자신탁(재간접형) | 80% 이상 |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2 |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 산 | 20% 이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

주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 (1)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 (1)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80% 이상 투자합니다.
- ②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됩니다.
-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 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모투자신탁명칭 | 주요투자전략 |
|-----------------------------|--|
| |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② 국내 상장 리츠(REITs)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REITs)에도 투자합니 다. |
| | ③ 상장 리츠(REITs)/ 상장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편입비는 80%를 기준으로 최소 65%에서 최대 95%를 목표로 변동성매매를 수행하며,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편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을 누적할 계획입니다. |
| | ④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 27,361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34,196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2,050.7 | |
| (YoY , %) | 5.9 | 1.9 | 2.5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3,826.9 | |
| 주요산업 |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 | | | | |

싱가포르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501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603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874.0 | |
| (YoY , %) | 9.7 | 3.8 | 1.1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686.7 | |
| 주요산업 | 전자, 화학, | 전자, 화학, 금융서비스, 석유, 가공식품, 생명과학 등 | | | | |

영국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 3,340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6,845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1,075.0 | |
| (YoY, %) | 8.7 | 4.4 | 0.1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1,116.0 | |

| 주요산업 |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
|------|------------------------------------|

일본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4,213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12,320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920.7 | |
| (YoY , %) | 2.6 | 1 | 1.9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989.8 | |
| 주요산업 |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 | | | | |

한국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 1,713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5,208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769.5 | |
| (YoY , %) | 4.3 | 2.6 | 1.4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761.1 | |
| 주요산업 | 전자, 통신,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 | | | | |

호주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1,584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2,676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447.5 | |
| (YoY , %) | 2.1 | 4.3 | 3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363.6 | |
| 주요산업 |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 | | | | |

홍콩

| 경제규모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 382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730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673.3 |
| (YoY , %) | 6.4 | -3.7 | 3.2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670.1 |
| 주요산업 |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 | | | |

^{*}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게 되며,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해서는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혜지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위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 동일 집합투자증

권에 2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 구분 | 세부 내용 |
|----------------------------------|---|
| 회세지 어머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
| 환혜지 방법 |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 목표 헤지비율 |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일본엔(JPY), 홍콩달러(HKD), 싱가포르달러(SG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효과적으로 환혜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와 그 외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혜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 |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 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환헤지 장점 | 환혜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혜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혜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혜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 환헤지 단점 | 환혜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혜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혜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혜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 환혜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혜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혜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혜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 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환혜지와 관련하여 환혜지의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혜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혜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위엄을 나열한 것입니다.) | |
|----------------|--|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종목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
| 금리 변동위험 |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 파생상품 위험 |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경감을 위한 환혜지 전략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혜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면, 이로 인한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경우의 가치상승이 발생하나 반대로 환혜지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혜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혜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혜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혜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환혜지를 하는 경우에도 보유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혜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변동, 유동성 비율 등 집합투자기구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혜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혜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혜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

| 재간접투자 위험 |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
| 원본손실 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거래상대방위험 |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자본시장법 제233조에 따라 이투자신탁의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즉, 모펀드 이전)될 예정이며, 아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i) 임의해지 하거나 (ii) 소규모 펀드 합병 방식 또는 모펀드 이전 방식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거나 동 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될 예정입니다. 1) 투자신탁을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2)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3)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리츠 유동성위험 |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라고 할지라도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
| 부도 등의 위험 | 주식, 채권 등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 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국가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
| 해외투자위험(자금송환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에 따른위험(종목) |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에따른 위험(지역) |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집중투자에따른위험(섹터) |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
| 적극적매매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투자대상 제한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상장 리츠 및 부동산펀드, 인프라펀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투자 가능한 종목 수 및 유동성이 제한적인 경우해외 상장 리츠 등의 편입비중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크게증가하는 경우 해외 상장 자산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
| 저유동성 종목 편입에 따른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일부 종목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을 수 있는데, 이는 매매체결 지연 또는 거래가격 급변동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하여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가격변동위험 |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유동성위험 |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부담 위험 |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른 보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 변동성 매매 전략 위험 |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시장가격(주가)과의 차이 발생시 저가매수, 고가매도의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변동성매매를 활용합니다. 주가 등락에 따라 주가 하락시 저가매수, 주가 상승시 고가매도 기회를 포착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배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 상승에 따른 고가매도 기회가 포착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편입 비중이 축소되어 배당 수익도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빈번하게 조정하게 됨에 따라 매매회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회전율은 높은 비용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 상장집합투자기구 유동성위험 |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 세부구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환매청구시위험 |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운용실무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 규모변동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과세제도 변경위험 |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
|---|--|
| 과세위험 |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
| 투자신탁 해지위험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잠재적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얻거나받은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책임을 지지 않으며,이로 인하여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않았을 경우보다회사에 불리하지않은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원칙으로하며,이해관계인이아는자와의 거래와동일 또는유사한조건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등집합투자업자의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집합투자기구에유리한거래이어야합니다.이상의잠재적인이해상충을포함하는거래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및관련규정상의제한을준수합니다. |
| 소프트 달러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
|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위험 |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u>실제 수익률 변동성</u>을 감안하여 <u>위험등급을 분류</u>하였습니다. 변동성

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97.5% VaR)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97.5% VaR)은 22.94% 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 _ | 1 | 2 | 3 | 4 | 5 | 6 |
|-----------|----------|--------|----------|--------|--------|-----------|
| 등 급 | (매우높은위험) | (높은위험) | (다소높은위험) | (보통위험) | (낮은위험) | (매우 낮은위험) |
| 97.5% VaR | 50%초과 | 50%이하 | 30%이하 | 20%이하 | 10%이하 | 1%이하 |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97.5% VaR값 22.94%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22.94%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 | 구분 |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
|--------------------------------|--|---------------|
|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제한 없음 | 있음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 온라인 가입자 | 있음 |
|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 비용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 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 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있음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제한 없음 | 없음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온라인 가입자 | 없음 |
|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저비용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 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 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없음 |
|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 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없음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 드 등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 |
| 종류S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 있음 |

27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 (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 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권 | |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의 가입자 | 없음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없음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 없음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없음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 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5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ᄌᆫᇵᆒᆸᄀ | 중도환매 허용 | | |
|---------|------------|--------------|--|
| 중도환매 불가 |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 |
| X | X | 0 | |

(9)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 종류 S 수익증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나) 종류 S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 해당사항 없음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들은 모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 |
|---|---|
| 구분 | 내용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 게시하지 아니합니다. |
| 공시장소 |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
| 공시주기 |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이유 | 종류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
|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모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집합투자 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시점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시점에 기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 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
| ②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③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
| ④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 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 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외화표시 상장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날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
| ⑤비상장채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⑦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
|---------|--|
| ⑧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평가방법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며 채권평가회사는 각 사의 독립적인 평가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 |
| ⑨기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 구성 |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 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
| 업무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 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 | 수수료율 | | | | | | |
|--------------------------|--|------------------|-------------|-------|-----------|--|--|--|
| 구분 | 가입자격 | 선취판매 수수료 | 후취판매 수수료 | 환매수수료 | 전환 수수료 | | | |
| 종류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 제한 없음 |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 | - | | | |
| 종류A-e 수수료선취- 온라인 | 온라인 가입자 |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 | - | | | |
| 종류AG 수수료선취- 오프라인-무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 | - | | | |

| 권유서미포 ' |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 = 가입자 | | | | |
|-------------------------------------|--|-----|-------------------------------|-----|---|
| 종류C 수수료미징구 저 -오프라인 | 제한 없음 | - | - | - | -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 온 -온라인 | | - | - | - | - |
| 중뉴CG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무 권으저비용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 = 가입자 | - | - | - | - |
| 종류C-I 전수수료미징구 - -오프라인-기 0 관 우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제5호 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 위하는 법인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1 | - | - | - |
| 종류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랩, 펀드 등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 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 | - | - | - |
| 종류S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를 추 |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 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증 | -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 | - | -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 - | - |
| -오프라인-퇴 금 직연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 - | - |
| 구우됴미성구 <u>-</u> -오라이-티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 | - | - | - |
| | 부과기준 | 매입시 | 환매시 | 환매시 | - |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 지급비용(연간%) | | | | | | | | |
|------------------------------------|------------------|------------|------------|--------------------|------|-------------|------------------|--------------|--|
| 구분 | 집합 투자업자 보수 | 판매회사 보수 | 신탁업자 보수 | 일반 사무관리 회사보수 | 총 보수 | 기타비용 주1) | 총보수 비용 주2) | 동종유형 총 보수 | 합성총보수 비용 (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
|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 라인 | 0.6 | 0.6 | 0.03 | 0.02 | 1.25 | 0.01 | 1.26 | 1.32 | 1.55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 인 | 0.6 | 0.3 | 0.03 | 0.02 | 0.95 | 0.01 | 0.96 | 1.02 | 1.25 |
| 종류AG 수수료선취-오프 라인-무권유저비 용 | 0.6 | 0.42 | 0.03 | 0.02 | 1.07 | - | 1.07 | - | 1.36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 | 0.6 | 0.92 | 0.03 | 0.02 | 1.57 | 0.01 | 1.58 | 1.70 | 1.87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 라인 | 0.6 | 0.46 | 0.03 | 0.02 | 1.11 | 0.01 | 1.12 | 1.15 | 1.41 |
| 종류CG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무권유저 비용 | 0.6 | 0.64 | 0.03 | 0.02 | 1.29 | - | 1.29 | - | 1.58 |
| 종류C-I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기관 | 0.6 | 0.03 | 0.03 | 0.02 | 0.68 | - | 0.68 | - | 0.97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랩, 펀드 등 | 0.6 | - | 0.03 | 0.02 | 0.65 | 0.01 | 0.66 | - | 0.95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 인슈퍼 | 0.6 | 0.29 | 0.03 | 0.02 | 0.94 | 0.01 | 0.95 | - | 1.24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개인연금 | 0.6 | 0.73 | 0.03 | 0.02 | 1.38 | 0.01 | 1.39 | - | 1.68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 라인-개인연금 | 0.6 | 0.36 | 0.03 | 0.02 | 1.01 | 0.01 | 1.02 | - | 1.31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 0.6 | 0.66 | 0.03 | 0.02 | 1.31 | 0.01 | 1.32 | - | 1.61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 라인-퇴직연금 | 0.6 | 0.33 | 0.03 | 0.02 | 0.98 | 0.01 | 0.99 | - | 1.28 |
|--------------------------------|-------------------|------|------|------|-----------|------|------|---|------|
| 지급시기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 | | 사유 발생시 | - | - |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
|---------|----------------------------|
| 증권 거래비용 | 13,122 |
| 금융비용 | -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2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중 보수 및 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해외 집합투자기구(리츠 등)는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 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 수익증권 종류 | 구분 | 1년후 | 2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종류A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229 | 364 | 506 | 808 | 1674 |
| 승규사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258 | 425 | 599 | 971 | 2037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48 | 251 | 359 | 589 | 124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78 | 312 | 453 | 753 | 1612 |
| 종류AG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79 | 294 | 415 | 671 | 1407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 유저비용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209 | 355 | 508 | 834 | 1769 |

| 종류C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61 | 331 | 509 | 888 | 1974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91 | 392 | 603 | 1051 | 2337 |
| 종류C-I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69 | 142 | 219 | 382 | 84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 관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99 | 203 | 312 | 545 | 1212 |
| 종류C-P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42 | 291 | 448 | 781 | 1737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72 | 352 | 541 | 944 | 2099 |
| 종류C-P2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35 | 277 | 425 | 742 | 1649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65 | 338 | 519 | 905 | 2012 |
| 종류C-P2e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01 | 207 | 319 | 556 | 1237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 연금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31 | 268 | 412 | 719 | 1599 |
| 종류C-Pe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04 | 214 | 328 | 573 | 1274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연금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34 | 275 | 422 | 736 | 1637 |
| 종류C-e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14 | 235 | 361 | 629 | 1399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44 | 296 | 454 | 793 | 1762 |
| 종류CG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32 | 270 | 416 | 725 | 161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 권유저비용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61 | 331 | 509 | 888 | 1974 |
| 종류F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67 | 138 | 212 | 371 | 82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97 | 199 | 306 | 534 | 1187 |
| 종류S |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 113 | 199 | 306 | 534 | 1187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 143 | 260 | 399 | 697 | 1549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한 값으로 3년 이상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감소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 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20년 3월 22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 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구 분 | 세부 내용 |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
| 대상자 | 세법상 거주자 |
| 가입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
| 계약기간 | <u>3년 이상</u> |
| 가입한도 |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
| 대상펀드 | 1. 「자본시장법」제229조제2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 회사에 투자하는「자본시장법」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부동산 투자회사법」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
| 세제혜택 |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소득세법」제129조에도 불구하고 <u>100</u> 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포함 9.9%) |
| 세제혜택 방법 |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 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감면세액추징 |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천재지변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또는 파산선고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 |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 구 분 | 주요 내용 |
|------|--|
| 납입요건 |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
| 수령요건 |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

| 세액공제 |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 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
| |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수령 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 는 경우) 연금외수령시 과세 |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
| 해지가산세 | 없음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 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 연금계좌 승계 |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
| |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 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 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6)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 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 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 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환매시점 | 1100원 | 1100원 | |
|------|-----------------|---------------------------|--|
| 손익 | (+)100원 (+)100원 | | |
| 세금 | | (+)100원*세율(15.4%) = 15.4원 | |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 매입시점 |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 | |
| 환매시점 | 900원 | 900원 | |
| 손익 | (-)100원 | (-)100원 | |
| 세금 |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 | |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 환매시점 | 900원 | 1100원 | |
| 손익 | 손익 (-)100원 (+)1 | | |
| 세금 | | (+)100원*세율(15.4%) = 15.4원 | |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 구분 | 기준가격 | 과표기준가격 | |
|------|---------|----------------------|--|
| 매입시점 | 1000원 | 1000원 | |
| 환매시점 | 1100원 | 900원 | |
| 손익 | (+)100원 | (-)100원 | |
| 세금 | |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 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국내 상장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미국, 일본, 싱가폴, 홍콩, 호주 등 REITs를 포함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발달된 지역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을 선별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동시에 투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2)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 MSCI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된 국가에 상장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운용사의 운용 경험 3년 이상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이 USD 1억 이상

(3)펀드 실사

- 공시확인: 투자대상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으로 주요 사항의 경우 거래소와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용보고서 확인: 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현황과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케이션: 필요시 현지 운용사 및 REITs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별도 자료 요청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 | 투자대상 | 투자비율 | 투자대상 세부설명 |
|---|---------|--------|--|
| 1 | 집합투자증권등 | 50% 초과 |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다만, 법 제229조에 따른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50% 초과로 합니다. |
| 2 | 주식 | 50% 이하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3 | 채권 | 50% 이하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4 | 자산유동화증권 | 40% 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
| 5 | 어음 | 40% 이하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 6 | 파생상품 | 위험평가액 10% 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부동산·주식·채권·통화나 부동산·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
| 7 | 금리스왑거래 | 보유증권총 액의 100% 이하 |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 |
| 8 | 환매조건부매도 | 보유증권총 액의 50% 이 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 |
| 9 | 증권의 대여 | 보유증권총 액의 50% 이 하 |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 |
| 10 | 증권의 차입 | 20% 이하 |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 |
| 11 | 신탁업자와의 거래 | -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 12 |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 산 | -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 |

- 주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sim5$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 7~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1.07.31 기준)

| 주된 투자대상 | 운용사 | 설정일 | 운용 규모 (억원, 백만불) |
|---------|---|---|---|
| 미국 부동산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6-09-28 | 3,513억 |
| 호주 부동산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7-03-17 | 1,390억 |
| 미국 부동산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17-07-10 | 1,825억 |
| 국내 부동산 | 코람코자산신탁 | 2018-06-27 | 3,762억 |
| 국내 인프라 | 맥쿼리자산운용 | 2006-03-15 | 45,817억 |
| 국내 부동산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07-01-09 | 5,365억 |
| 국내 부동산 | 신한리츠운용 | 2018-08-08 | 4,186억 |
| 국내 부동산 | 롯데AMC | 2019-10-30 | 14,408억 |
| 유럽 부동산 | 제이알투자운용 | 2020-08-07 | 8,793억 |
| 국내 부동산 | 코람코자산신탁 | 2020-08-31 | 4,149억 |
| 국내 부동산 | 미래에셋자산운용 | 2020-08-05 | 1,003억 |
| 국내 부동산 | 켄달스퀘어리츠운용 | 2020-12-23 | 9,770억 |
| 미국 부동산 | Crown Castle International Corp | 1998-08-17 | 83,415 |
| 글로벌 부동산 | Digital Realty Trust Inc | 2004-10-29 | 44,654 |
| 글로벌 부동산 | Global Net Lease Inc | 2015-06-02 | 1,762 |
| 미국 부동산 | MGM Growth Properties LLC | 2016-04-20 | 10,009 |
| 글로벌 부동산 |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 1992-08-06 | 8,539 |
| | 미국 부동산 호주 부동산 미국 부동산 국내 부동산 국내 부동산 국내 부동산 국내 부동산 유럽 부동산 국내 부동산 리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국 부동산 □국 부동산 | 미국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호주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국내 인프라 맥쿼리자산운용 국내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부동산 시한리츠운용 국내 부동산 롯데AMC 유럽 부동산 제이알투자운용 국내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국내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래 부동산 기에 기살투자운용 그래 부동산 기를 가운용 그래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래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대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그대 부동산 진당스퀘어리츠운용 미국 부동산 진당 International Corp 글로벌 부동산 Global Net Lease Inc 미국 부동산 MGM Growth Properties LLC | 미국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6-09-28 호주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7-03-17 미국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7-07-10 국내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18-06-27 국내 인프라 맥쿼리자산운용 2006-03-15 국내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07-01-09 국내 부동산 신한리츠운용 2018-08-08 국내 부동산 롯데AMC 2019-10-30 유럽 부동산 제이알투자운용 2020-08-07 국내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20-08-07 국내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8-31 국내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8-31 국내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12-23 미국 부동산 전달스퀘어리츠운용 2020-12-23 미국 부동산 Digital Realty Trust Inc 2004-10-29 글로벌 부동산 Global Net Lease Inc 2015-06-02 |

[※] 개별 피투자펀드의 투자 비중은 최대 20%이며, 운용 전략상 순자산의 최소 50%, 최대 100%를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구분 | 내용 | 적용제외 |
|---|----------------|--|------|
| 1 |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경우를 말한다) | - |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2 | 동일종목 투자 | 1기업어음등권 외의 어음 내물새권•메금•금융위원회가 장아면 고시아는 새 그 |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
|---|-----------------|--|--|
| 3 | 동일종목투자 (예외) | 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기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 | - |
| | | 다. 공일답인 등이 일행한 시문등권(그 답인 등이 일행한 시문등권과 관련된 등 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 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 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
| 4 | 동일법인발행 주식 |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 - |
| 5 | 집합투자기구 에의 투자 | 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마 이 투자신탁재사으로 같은 지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소의 20% 간 |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 만 해당) |
| 6 | |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 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 - |

| | T |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 | |
| | | 구에의 투자 중 가목 내지 다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 | |
| | | 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 | |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 |
| | |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 |
| | |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 |
| | | 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 | |
| | | 합투자증권 | |
| | |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 | |
| | | 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 | |
| | | 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 | |
| | | 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 | |
| | | 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 | |
| | | 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
| | | 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 | |
| | | 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② 단체 사자지수지합투자기고기 모표를 하는 지수의 고성종모의 법 시해령 | |
| | |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 |
| | | MOO도제1성제1보기국무대 대속까지의 에드 아니에 예정하는 중권될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 |
| | |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 |
| | 외) |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 | |
| | - 1/ | 지 아니할 것 | |
| | |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 |
| | |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 |
| | | 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 |
| | |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 |
| | |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 | |
| | | 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 | |
| | | 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 |
| |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 | |
| | |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 |
| | |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 | |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 | |
| | | 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 |
| | |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 | |
| | |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 |
| | | 물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 |
| | | 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 | |
| | | 구사업자가 군용하는 업업무자기구의 자신등액의 100군의 90 이성을 외와자 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 |
| | | 전에 문용하는 경우인 애령인다) 에 각 접합부자기구 자신용액의 100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 |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 |
| 7 | 파생상품 투 |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 최초설정일로 |
| | 자 | 행위 | 부터 1개월간 |
| 0 | 파생상품 투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 최초설정일로 |
| 8 | 자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부터 1개월간 |
| 9 | 파생상품 투 |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 | |
| 3 | 자 | 품을 매매하는 행위 | _ |
| 10 | 계열회사 발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 | _ |
| | 행증권 | 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sim8$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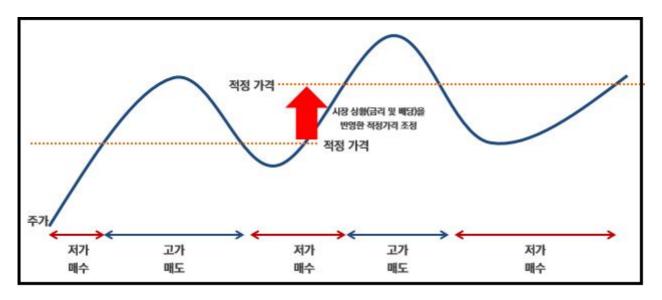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 ② 국내 상장 리츠(REITs)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REITs)에도 투자합니다.
- ③ 상장 리츠(REITs)/ 상장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편입비는 80%를 기준으로 최소 65%에서 최대 95%를 목표로 변동성매매를 수행하며,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편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을 누적할 계획입니다.

<변동성 매매 전략>

배당할인모형 등을 기반한 정량적평가와 리스크를 감안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시장가격(주가)과의 차이 발생시 저가매수, 고가매도의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 * 배당할인모형: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배당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합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모형
- ④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2021.07.31 기준)

| ※ 써무시된는 개요 편드명 | 설정지국가 | 외국감독기관 | 투자비중 (%) | 주요 투자 대상 |
|---------------------------------|-------|--|-------------|---|
| 맵스미국9-2호 | 한국 | - | 2.33 |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오피스 4곳을 보유한 펀드 |
| 맵스호주2호 | 한국 | - | 1.54 |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오피스 1곳을 보유한 펀드 |
| 맵스미국11호 | 한국 | - | 1.16 | 애틀랜타의 오피스 1곳을 보유한 펀드 |
| 이리츠코크렙 | 한국 | - | 7.61 | 아울렛과 백화점 5개점을 소유한 국내 리테일 리츠 |
| 맥쿼리인프라 | 한국 | - | 7.4 | 12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 인프라 펀드 |
| 맵스리얼티1 | 한국 | - | 8.75 | 서울, 판교 등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 등을 보유한 부동산편드 |
| 신한알파리츠 | 한국 | - | 5.59 | 국내 유일한 상장 대형 오피스 리츠로 판교와 용산에 오피스 보유 |
| 롯데리츠 | 한국 | - | 14.28 | 백화점, 마트, 아울렛 10개 점포를 운용하는 리츠 |
| 제이알글로벌리츠 | 한국 | - | 8.1 | 벨기에 브뤼셀에 오피스 1곳을 보유한 리츠 |
| 코람코에너지리츠 | 한국 | - | 3.5 | 수도권 중심으로 180여개의 주유소를 보유한 리츠 |
| 미래에셋맵스리츠 | 한국 | - | 1.82 | 광교에 상업시설 1곳을 보유한 리츠 |
| ESR켄달스퀘어리츠 | 한국 | - | 5.05 | 12곳의 몰류 센터를 보유한 국내 리츠 |
| Crown Castle International Corp | 미국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0.86 | 미국 내 매크로타워, 소형 셀, 광섬유를 보유한 통신 인프라 리츠 |
| Digital Realty Trust Inc | 미국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0.86 | 290여개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리츠 |
| Global Net Lease Inc | 미국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0.9 | 미국과 유럽에 300여개의 오피스와 산업용 시설을 보유한 리 츠 |
| MGM Growth Properties LLC | 미국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0.93 | 미국 내 16곳의 카지노를 보유한 리츠 |
|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 미국 |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0.91 | 미국과 영국에 950여개의 전문 강호 요양 시설을 보유한 리 츠 |

-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비교지수 : 없음
-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영국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3,340.0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6,845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1,075.0 | |
| (YoY, %) | 8.7 | 4.4 | 0.1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1,116.0 | |
| 주요산업 | 공작 기계, 건 |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 | | | |

한국

| 거레그ㅁ | 이그 미 데이므여 그ㅁ |
|------|--------------|
| 경제규모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GDP(2023 년 , 십억 US\$) | | 1,713.0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5,208 |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769.5 | |
| (YoY , %) | 4.3 | 2.6 | 1.4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761.1 | |
| 주요산업 | 전자, 통신,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 | | | | |

호주

| | 경제규모 | 인구 및 대외무역 |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1,584.0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2,676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447.5 |
| (YoY , %) | 2.1 | 4.3 | 3.0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363.6 |
| 주요산업 |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 | | | |

홍콩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382.1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730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673.3 | |
| (YoY , %) | 6.4 | -3.7 | 3.2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670.1 | |
| 주요산업 |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 | | | | |

미국

| | 경제규모 | 인구 및 대외무역 |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27,360.9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34,196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2,050 | |
| (YoY,%) | 5.9 | 1.9 | 2.5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3,826.9 |
| 주요산업 |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 | | | |

일본

| | 경제규모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4,213.0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12,320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920.7 |
| (YoY , %) | 2.6 | 1.0 | 1.9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989.8 |
| 주요산업 |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 | | | |

싱가포르

| 경제규모 | | | |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 | |
|-----------------------|-----------|---------------------------------|-------|-----------------------|-------|--|
| GDP(2023 년 , 십억 US\$) | 501.4 | | |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 603 | |
| GDP 성장률 추이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수출 (2023 년 , 십억 US\$) | 874.0 | |
| (YoY , %) | 9.7 | 3.8 | 1.1 | 수입 (2023 년 , 십억 US\$) | 686.7 | |
| 주요산업 | 전자, 화학, · | 전자, 화학, 금융서비스, 석유, 가공식품, 생명과학 등 | | | | |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20% 이하로 투자함으로

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투자펀드의 운용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검토합니다. 운용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 구성 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할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피투자펀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 구분 | 세부 내용 |
|--------------------------------------|---|
| 환헤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혜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혜지를 실시합니다. |
| 환헤지 방법 | 환혜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목표 헤지비율 |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일본엔(JPY), 홍콩달러(HKD), 싱가포르달러(SG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혜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와 그 외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혜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혜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혜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혜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혜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환헤지 장점 | 환혜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혜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혜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혜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 환헤지 단점 | 환혜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혜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혜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혜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 환혜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 익률에 미치는 효과 |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혜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 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혜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 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혜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환혜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혜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50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 | 감사의견 |
|--------------------------|------|
| 37 (22.03.23 ~ 23.03.22) | 적정 |
| 47 (23.03.23 ~ 24.03.22) | 적정 |
| 57 (24.03.23 ~ 25.03.22) | 적정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 요약 재무 | 상태표 | |
|----------|---------------|---------------|---------------|
| 항목 | 57 (25.03.22) | 47 (24.03.22) | 37 (23.03.22) |
| 운용자산 | 45,341 | 52,676 | 58,156 |
| 증권 | 45,065 | 52,411 | 57,890 |
| 파생상품 | -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276 | 265 | 266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기타자산 | 157 | 264 | 383 |
| 자산총계 | 45,498 | 52,940 | 58,540 |
| 운용부채 | - | - | - |
| 기타부채 | 167 | 590 | 1,862 |
| 부채총계 | 167 | 590 | 1,862 |
| 원본 | 41,174 | 48,992 | 54,973 |
| 수익조정금 | - | - | - |
| 이익잉여금 | 4,157 | 3,358 | 1,704 |
| 자본총계 | 45,331 | 52,350 | 56,678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 | | | | | |
|------------|--------------------------|--------------------------|--------------------------|--|--|--|--|--|--|--|--|
| 항목 | 57 (24.03.23 ~ 25.03.22) | 47 (23.03.23 ~ 24.03.22) | 37 (22.03.23 ~ 23.03.22) | | | | | | | | |
| 운용수익 | 1,633 | 2,640 | -16,040 | | | | | | | | |
| 이자수익 | 8 | 6 | 5 | | | | | | | | |
| 배당수익 | - | 1 | 4,175 | | | | | | | | |
| 매매/평가차익(손) | 1,624 | 2,633 | -20,221 | | | | | | | | |
| 기타수익 | - | - | - | | | | | | | | |
| 운용비용 | 519 | 552 | 738 | | | | | | | | |
| 관련회사보수 | 518 | 550 | 736 | | | | | | | | |
| 매매수수료 | - | - | - | | | | | | | | |
| 기타비용 | - | 1 | 1 | | | | | | | | |
| 당기순이익 | 1,113 | 2,087 | -16,778 | | | | | | | | |
| 매매회전율 | 54 | 28 | 60 | | | | | | | | |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 재무상태표 | | |
|------------|---------------|---------------|---------------|
| 항목 | 57 (25.03.22) | 47 (24.03.22) | 37 (23.03.22) |
| 운용자산 | 45,341 | 52,676 | 58,156 |
| 증권 | 45,065 | 52,411 | 57,890 |
| 주식 | - | - | - |
| ETF | - | - | - |
| 채권 | - | - | - |
| 매입어음 | - | - | - |
| 수익증권 | 45,065 | 52,411 | 57,890 |
| 외화유가증권 | - | - | - |
| 기타유가증권 | - | - | - |
| 파생상품 | - | - |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 | - |
| ELS | - | - | - |
| ELW | - | - | - |
| DLS | - | - | - |
| 부동산/실물자산 | - | - | - |
| 부동산 | - | - | - |
| 현금 및 예치금 | 276 | 265 | 266 |
| 예금 | 276 | 265 | 266 |
| 외화예금 | - | - | - |
| CD | - | - | - |
| 정기예금 | - | - | - |
| 위탁증거금 | - | - | - |
| 청약증거금 | - | - | - |
| 기타운용자산 | - | - | - |
| 콜론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 | - | - | - |
| 기타자산 | 157 | 264 | 383 |
| 미수이자 | - | - | - |
| 미수배당금 | - | - | -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 156 | 264 | 383 |
| 선물정산미수입금 | - | - | - |
| 선납(선급)원천세 | _ | - | - |
| 기타 | - | - | - |
| 자산총계 | 45,498 | 52,940 | 58,540 |
| 운용부채 | - | - | - |
| 매도유가증권 | - | - | - |
| 미지급주식 | - | - | - |
| 미지급채권 | - | - | - |
| 미지급ETF | - | - |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 | - |
| 기타부채 | 167 | 590 | 1,862 |
| 미지급보수 | 111 | 131 | 154 |
| 미지급해지금 | 33 | 126 | 219 |
| 미지급이익분배금 | 21 | 331 | 1,487 |
| 미지급원천세 | - | - | - |
| 기타부채 | - | 1 | 1 |
| 부채총계 | 167 | 590 | 1,862 |
| 원본 | 41,174 | 48,992 | 54,973 |
| 수익조정금 | - | - | |
| 이익잉여금 | 4,157 | 3,358 | 1,704 |
| 당기순이익 | - | - | |
| 감자차익/차손 | - | - | - |
| 자본총계 | 45,331 | 52,350 | 56,678 |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 손익겨 | 산서 | |
|------------|--------------------------|--------------------------|--------------------------|
| 항목 | 57 (24.03.23 ~ 25.03.22) | 47 (23.03.23 ~ 24.03.22) | 37 (22.03.23 ~ 23.03.22) |
| 운용수익 | 1,633 | 2,640 | -16,040 |
| 투자수익 | 8 | 6 | 4,181 |
| 이자수익 | 8 | 6 | 5 |
| 배당수익 | - | - | 4,175 |
| 기타수익 | - | - | - |
| 매매이익 | 3,886 | 3,062 | 886 |
| 주식매매이익 | - | - |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 | - | - |
| 채권매매이익 | - | - | - |
| 외환거래이익 | - | - |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 | - |
| ETF매매이익 | - | - | - |
| 수익증권매매이익 | 3,886 | 3,062 | 886 |
| 기타매매이익 | - | - | - |
| 매매손실 | 2,262 | 429 | 21,107 |
| 주식매매손실 | - | - |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 | - | - |
| 채권매매손실 | - | - | - |
| 외환거래손실 | - | - |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 | - |
| ETF매매손실 | - | - | - |
| 수익증권매매손실 | 2,262 | 429 | 21,107 |
| 기타매매손실 | - | - | - |
| 운용비용 | 519 | 552 | 738 |
| 위탁보수비 | 307 | 322 | 434 |
| 판매보수비 | 185 | 201 | 266 |
| 수탁보수비 | 15 | 16 | 21 |
| 사무관리보수비 | 10 | 10 | 14 |
| 자문보수비 | - | - | - |
| 매매수수료 | - | - | - |
| 기타비용 | - | 1 | 1 |
| 당기순이익 | 1,113 | 2,087 | -16,778 |
| 비용 | 2,781 | 981 | 21,846 |
| 수익 | 3,895 | 3,069 | 5,067 |
| 천좌당 순이익(원) | 18 | 30 | -208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1 1 11 | T # C II | | | | | | | | | |
|-------------------------|-------------------|-------|-------------------|-------|-------------------|-------|-------------------|-------|-----|--|
| | 기간초잔고 | | | 회계기 | 간중 | 기간말잔고 | | 재투자 |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기단글단포 | | 금액 |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 '22.03.23~' 23.03.22 | 7,308 | 9,004 | 3,288 | 4,078 | 4,480 | 5,372 | 6,117 | 7,710 | 231 | |
| '23.03.23~' 24.03.22 | 6,117 | 6,100 | 33 | 33 | 1,191 | 1,184 | 4,959 | 4,949 | - | |
| '24.03.23~' 25.03.22 | 4,959 | 5,021 | 399 | 398 | 276 | 279 | 5,082 | 5,141 | 119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 T T # L T I | ·T#01-640 | | | | | | | | | |
|-------------------------|-------------------|---------|-------------------|-------|-------------------|---------|-------------------|-------|-----|--|
| | 기간초잔고 | | | 회계기 | 간중 | - 기간말잔고 | | 재투자 | | |
| | 기간기 | خد نے د | 설정(발생) | | 환매 | | | 금액 | |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 '22.03.23~' 23.03.22 | 5,050 | 6,845 | 4,394 | 6,017 | 3,634 | 4,747 | 5,810 | 8,116 | 212 | |
| '23.03.23~' 24.03.22 | 5,810 | 6,138 | 288 | 304 | 1,337 | 1,396 | 4,761 | 5,045 | 256 | |
| '24.03.23~' 25.03.22 | 4,761 | 5,244 | 93 | 106 | 1,033 | 1,139 | 3,821 | 4,210 | -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1 1 1 1 1 1 1 | <u> </u> | | | | | | | | |
|-------------------------|-------------------|--------|-------------------|-------|-------------------|-------|-------------------|-------|-----|
| | 기간초잔고 |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기단된단포 | | 금액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22.03.23~' 23.03.22 | 8,183 | 10,134 | 3,028 | 3,790 | 5,067 | 6,117 | 6,144 | 7,806 | 145 |
| '23.03.23~' 24.03.22 | 6,144 | 6,139 | 169 | 167 | 649 | 642 | 5,664 | 5,663 | - |
| '24.03.23~' 25.03.22 | 5,664 | 5,774 | 105 | 107 | 826 | 866 | 4,943 | 5,015 | 90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1 1 10 | <u> </u> | | | | | | | | |
|-------------------------|-------------------|-------|-------------------|-------|-------------------|-------|-------------------|-------|-----|
| | 기간초잔고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재투자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기단한단포 | | 금액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22.03.23~' 23.03.22 | 5,069 | 6,889 | 4,561 | 6,299 | 2,851 | 3,701 | 6,779 | 9,487 | 173 |
| '23.03.23~' 24.03.22 | 6,779 | 7,179 | 508 | 532 | 1,388 | 1,452 | 5,899 | 6,259 | 289 |
| '24.03.23~' 25.03.22 | 5,899 | 6,502 | 126 | 142 | 930 | 1,046 | 5,095 | 5,599 | - |

종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1 1 1 1 1 1 1 | ——- L | _ | | | | | | | | | |
|-------------------------|-------------------|--------------|-------------------|--------|-------------------|--------|-------------------|--------|-----|--|--|
| | 기간초잔고 |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기단결산포 | | 금액 | |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급 | 좌수 (출자지 분수) | 급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
| '22.03.23~' 23.03.22 | 18,824 | 25,653 | 12,332 | 17,124 | 18,824 | 24,255 | 12,332 | 18,522 | 808 | | |
| '23.03.23~' 24.03.22 | 12,332 | 13,115 | 5,448 | 5,834 | 4,996 | 5,414 | 12,784 | 13,534 | 574 | | |
| '24.03.23~' 25.03.22 | 12,784 | 14,216 | 9,787 | 11,317 | 13,467 | 14,990 | 9,104 | 10,542 | - |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u> </u> | | | | | | | | | | | |
|-------------------------|-------------------|-----|-------------------|-------|-------------------|-----|-------------------|-------|----|--|--|
| | 기간초잔고 | | | 회계기간중 | | | | 기간말잔고 | | | |
| | | | 설정(발생) | | 환매 | | 기선발산포 | | 금액 | |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
| '22.03.23~' 23.03.22 | 335 | 399 | 271 | 316 | 169 | 181 | 437 | 535 | 11 | | |
| '23.03.23~' 24.03.22 | 437 | 423 | 147 | 138 | 175 | 165 | 409 | 396 | - | | |
| '24.03.23~' 25.03.22 | 409 | 409 | 260 | 276 | 295 | 312 | 373 | 373 | 3 |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フレフトブ | - XI-D | | 회계기 | 간중 | | 기간밀 | 나자그 | 재투자 |
|-------------------------|-------------------|--------|-------------------|-----|-------------------|-----|-------------------|-------|-----|
| | 기간초전 | | 설정(| 발생) | 환 | 매 | 기간 = | 금액 |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22.03.23~' 23.03.22 | 899 | 1,122 | 384 | 466 | 407 | 478 | 876 | 1,110 | 25 |
| '23.03.23~' 24.03.22 | 876 | 876 | 29 | 29 | 200 | 195 | 705 | 709 | 7 |
| '24.03.23~' 25.03.22 | 705 | 722 | 21 | 21 | 83 | 88 | 642 | 656 | 9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1 1 10 | | | | | | | | | |
|-------------------------|----------------------|-------|-------------------|-------|-------------------|-------|-------------------|-------|-----|
| | フレフトブ | 동자그 | | 회계기 | 간중 | 기간밀 | 재투자 | | |
| | 기간초잔고 | | 설정(| 발생) | 환 | 매 | 기간 a | 금액 | |
| 기간 | 좌수 (출자지 금액 분수)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22.03.23~' 23.03.22 | 3,799 | 5,160 | 6,079 | 8,172 | 3,135 | 3,943 | 6,744 | 9,389 | 143 |
| '23.03.23~' 24.03.22 | 6,744 | 7,135 | 669 | 708 | 1,921 | 2,027 | 5,491 | 5,816 | 296 |
| '24.03.23~' 25.03.22 | 5,491 | 6,054 | 833 | 937 | 1,460 | 1,629 | 4,864 | 5,362 |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フレフトナ | - XL ¬ | | 회계기 | 기간중 | | 기간밀 | 재투자 | |
|-------------------------|-------------------|--------|---------------|-------|-------------------|-------|-------------------|-------|----|
| | 기간최 | 2인고 | 설정(| 발생) | 환 | 매 | 기신함 | 금액 | |
| 기간 | 좌수 (출자지 분수) | 마 | 금액 (출자지 금액 (출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22.03.23~' 23.03.22 | 2,633 | 3,102 | 2,957 | 3,349 | 2,136 | 2,463 | 3,454 | 3,988 | 66 |
| '23.03.23~' 24.03.22 | 3,454 | 3,293 | 207 | 195 | 710 | 663 | 2,952 | 2,824 | _ |
| '24.03.23~' 25.03.22 | 2,952 | 2,923 | 84 | 81 | 1,438 | 1,503 | 1,598 | 1,502 |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u> </u> | ᅵᆖᅴᆜᆍ | | | | | | | | |
|-------------------------|-------------------------------|-------|-------------------|-------|-------------------|-------|-------------------|--------|-----|
| | フレフレス | ᅐᄌᆘᄀ | | 회계기 | 간중 | | 기간밀 | IFXF 그 | 재투자 |
| | 기간초잔고 좌수 (출자지 금액 분수) | | 설정(발생) | | 환 | 매 | 기신 a | 금액 | |
| 기간 | |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좌수 (출자지 분수) | 금액 | 금액 |
| '22.03.23~' 23.03.22 | 5,176 | 6,440 | 5,407 | 6,641 | 4,308 | 4,804 | 6,276 | 8,277 | 187 |
| '23.03.23~' 24.03.22 | 6,276 | 6,276 | 987 | 983 | 1,900 | 1,866 | 5,363 | 5,392 | 62 |
| '24.03.23~' 25.03.22 | 5,363 | 5,481 | 2,537 | 2,671 | 2,252 | 2,317 | 5,648 | 5,835 | 1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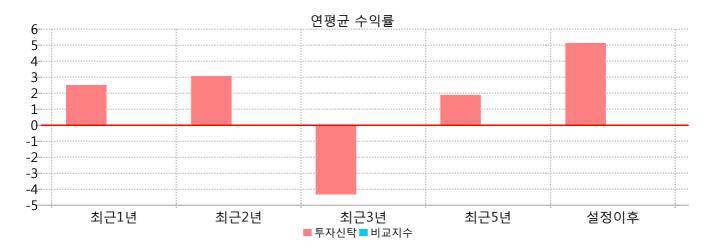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 연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이후 |
|----------------------------|-----------------------|-----------------------|-----------------------|-----------------------|------------------|
| (기간) | 24.06.01~ 25.05.31 | 23.06.01~ 25.05.31 | 22.06.01~ 25.05.31 | 20.06.01~ 25.05.31 | 설정일~ 25.05.31 |
|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1.24 | 1.81 | -5.53 | 0.62 | 1.99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 1.55 | 2.12 | -5.24 | 0.92 | 4.14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0.92 | 1.49 | -5.83 | 0.30 | 1.66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1.38 | 1.95 | -5.39 | 0.76 | 3.97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1.85 | 2.42 | -4.96 | 1.22 | 4.45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1.55 | 2.12 | -5.24 | - | 1.65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1.11 | 1.68 | -5.65 | 0.49 | 2.12 |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1.49 | 2.06 | -5.30 | 0.86 | 4.08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1.18 | 1.75 | -5.59 | - | 1.00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1.52 | 2.09 | -5.27 | 0.89 | 2.45 |
| 투자신탁 | 2.52 | 3.08 | -4.34 | 1.88 | 5.13 |
| 비교지수 | - | - | - | - | - |
| 수익률 변동성 | 11.70 | 11.09 | 13.11 | 10.95 | 11.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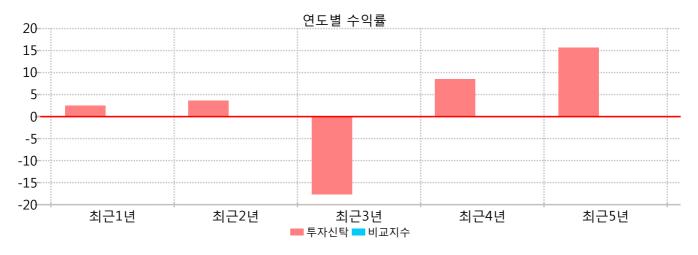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 연도 | 최근 1년차 | 최근 2년차 | 최근 3년차 | 최근 4년차 | 최근 5년차 |
|----------------------------|-----------------------|-----------------------|-----------------------|-----------------------|-----------------------|
| (기간) | 24.06.01~ 25.05.31 | 23.06.01~ 24.05.31 | 22.06.01~ 23.05.31 | 21.06.01~ 22.05.31 | 20.06.01~ 21.05.31 |
| 종류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 1.24 | 2.39 | -18.68 | 7.12 | 14.20 |
| 종류A-e 수수료선취-온라인 | 1.55 | 2.70 | -18.43 | 7.43 | 14.54 |
| 종류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0.92 | 2.07 | -18.95 | 6.78 | 13.85 |
| 종류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1.38 | 2.53 | -18.56 | 7.26 | 14.36 |
| 종류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펀드 등 | 1.85 | 3.00 | -18.18 | 7.75 | 14.88 |
| 종류S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 1.55 | 2.70 | -18.43 | 7.44 | 21.52 |

|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1.11 | 2.26 | -18.79 | 6.98 | 14.06 |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1.49 | 2.63 | -18.48 | 7.37 | 14.47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1.18 | 2.33 | -18.73 | 7.05 | 17.32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1.52 | 2.67 | -18.45 | 7.40 | 14.51 |
| 투자신탁 | 2.52 | 3.67 | -17.63 | 8.45 | 15.62 |
| 비교지수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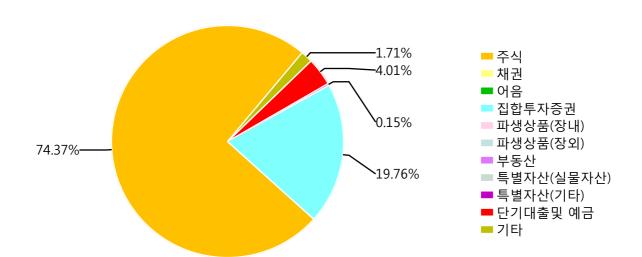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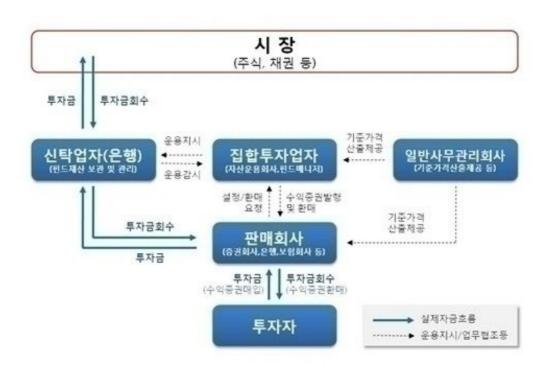
-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중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만, 2025.03.31 기준)

| | | 증 | 권 | | 파생 | 상품 | | 특별 | 자산 | 단기 | | |
|--------|--------|----|----|----------------|----|----|------|----------|----|---------|------|----------|
| 통화별 구분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증권 | 장내 | 장외 | 부동산 | 실물 자산 | 기타 | 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KRW(한 | 33,004 | 1 | _ | 8,770 | - | 1 | 1 | _ | ı | 1,776 | 759 | 44,308 |
| 국) | 74.36 | - | _ | 19.76 | - | - | 1 | _ | - | 4 | 1.71 | 99.84 |
| USD(□ | 1 | - | _ | - | - | - | 68 | _ | 1 | 5 | - | 73 |
| 국) | 1 | - | _ | - | - | - | 0.15 | _ | 1 | 0.01 | - | 0.16 |
| 합계 | 33,004 | - | _ | 8,770 | - | - | 68 | _ | - | 1,781 | 759 | 44,381 |
| 합계 | 74.36 | - | - | 19.76 | - | - | 0.15 | - | - | 4.01 | 1.71 | 100 |

자산구성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
| 홈 페 이 지 주 소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자 본 총 계 | 3조 8,749억원 (2024년 12월 31일 기준) |
| 주 요 주 주 현황 | 박 현 주 外 |
| 회 사 연 혁 |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 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 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 요 ⁽ | 약 재무상태표 | | | 요약 손익계산서 | |
|-----------------|------------|------------|----------|----------------------------|----------------------------|
| 항 목 | 2024.12.31 | 2023.12.31 | 항 목 | 2024.01.01 ~ 2024.12.31 | 2023.01.01 ~ 2023.12.31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92,708 | 2,640 | 영업수익 | 423,329 | 391,365 |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123,681 | 185,435 | 영업비용 | 282,107 | 296,169 |
| 유가증권 | 4,647,770 | 4,175,022 | 영업이익 | 141,222 | 95,196 |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66,887 | 21,437 | 지분법손익 | 385,105 | 425,153 |
| 기타자산 | 6,560 | 5,950 | 영업외수익 | 10,250 | 1,506 |
| 자산총계 | 4,937,606 | 4,390,484 | 영업외비용 | 2,916 | 2,132 |
| 예수부채 | 20,201 | 89,015 | 법인세차감전이익 | 533,661 | 519,724 |
|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 619,314 | 619,171 | 당기순이익 | 450,732 | 446,764 |
| 기타부채 | 423,101 | 312,140 | | | |
| 부채총합 | 1,062,616 | 1,020,326 | | | |
| 자본금 | 67,861 | 67,861 | | | |
| 자본잉여금 | 246,633 | 246,633 | | | |
| 기타포탈손익누계 | 80,811 | 7,977 | | | |
| 이익잉여금 | 3,479,685 | 3,047,687 | | | |
| 자본총계 | 3,874,990 | 3,370,158 | | | |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3.31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 집합투 | | | 증권 | | | 다기 | 다기 교새 | | | | ЕН БО | | | | 투자 | |
|-----------|--------|----------|----------|--------|-------------|-------|------------|--------|--------|----------|----------|-----|----------|---------|----|--|
| 자기구 종류 | 주식 | 혼합 주식 | 혼합 채권 | 채권 | 소계 | 금융 | 파생 상품 | 부동산 | 재간접 | 특별 자산 | 혼합 자산 | PEF | 일임 기타 | 총계 | | |
| 수탁고 | 57,452 | 3,739 | 4,657 | 40,488 | 106,33 6 | 5,701 | 22,38 6 | 11,725 | 47,007 | 9,424 | 8,940 | 934 | - | 212,453 |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국민은행 |
|---------|--|
| 주소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 02-2073-7114 |
| 홈페이지 | www.kbstar.com |
| 연혁 | 1963년 2월 설립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 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 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한국펀드파트너스㈜ |
|---------|---|
| 주소및 연락처 |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
| 홈페이지 | korfp.com |
| 연혁 |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KIS자산평가(주) |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
| 홈페이지 | www.bond.co.kr |
| | |
| 회사명 | 에프앤자산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
|----------|---------------------------------------|
| 홈페이지 | www.fnpricing.com |
| | |
| 회사명 | 한국자산평가(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
| 홈페이지 | www.koreaap.com |
| | |
| 회사명 | 나이스피앤아이(주)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 |
| 홈페이지 | www.nicepni.com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口)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a)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 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 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 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 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 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 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 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 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 • 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 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 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 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 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 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 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기 간 | 매매처명 | 거래구분 | 자산구분 | 거래금액 |
|-----|------|------|------|------|
| | | | |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 구분 | 내용 |
|--------------|---|
| <증권의 거래> | ① 선정 시 고려사항 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 팬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 서 유리할 것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 선정방법 등 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 |
|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 2억원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투자금 회수계획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주1)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당연 해지사유 발생
- ②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③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④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⑤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2)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3)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 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붙임] 용어풀이

| 용어 | 내용 |
|------------------|--|
| | |
| 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
| 집합투자업자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집합투자기구(=펀드)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 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
| 신탁업자 |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개방형(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폐쇄형(집합투자기구) |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
| 추가형(집합투자기구)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단위형(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
| 종류형(집합투자기구) |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 가방법은 동일합니다. |
| 증권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부동산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 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 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레버리지효과 |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 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 합니다. |
| 보수 |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혜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
|--------------------------------|--|
|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 자자총회) |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 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 수익증권 |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 (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신주인수권부사채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 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 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 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 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 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
| 설정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환매수수료 |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수수료 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 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
| 환헤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 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혜지 전략을 구사하 기도 합니다. |